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22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23 October 2019  
Person in charge : Heo Kang-Yi

No: 2019-IMO-08

Date: 23 October, 2019

### Subject : 파나마 국적선의 BWMS Commissioning Test 시행 등에 관한 지침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이하 BWM 협약이라 함)은 2004년도에 채택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의 평형수를 통한 유해미생물 및 병원균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이며, 2017년 9월 8일 이후로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MEPC 74차(2019.05)는 선박에 설치된 BWMS에 대하여 최초 또는 BWM 추가검사 시에 Commissioning Test가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BWM 협약의 E-1.1 및 E-1.5 규칙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의 목적은 기구가 개발한 지침서를 고려<sup>1)</sup>하여 선박에 설치된 BWMS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파나마 해사청에서는 MMC-345를 최신화 하였으며, 본 지침 발행 이후 총톤 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탑재되는 BWMS<sup>2)</sup>에 샘플 분석을 포함한 Commissioning Test가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기술정보는 Commissioning Test 시에 샘플 분석의 강제시행과 BWMP에 비상시 조치방안 (Contingency Measure)의 포함에 관한 파나마 기국지침으로서 이에 관련된 요건 및 참조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오니 파나마 국적선의 선주, 조선소, 평형수 시험기관 및 관련단체 들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요건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1) BWM.2/Circ.70 : Guidance for the commissioning testing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2) BWM 협약의 B-3 규칙에 따라,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들은 D-2 기준의 만족을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되며,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들은 2019년 9월 8일 이후에 도래하는 IOPP 정기검사 시까지 D-2 기준의 만족을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됨

1. 선급은 Commissioning test 시에 설치된 BWM 장비의 생물학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WM.2/Circ.70’의 Commissioning Test 지침을 참고하여 샘플 분석을 통해 지표분석시험 (indicative analysis testing)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지표분석시험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부 분석(detailed analysis)이 이뤄져야 한다. (BWM.2-Circ.42-Rev.1의 지침 내용을 참조)
2. Commissioning Test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은 RO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승인된 시험기관이어야 하고 하청업체나 전문공급업자와 관련하여 RO Code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Commissioning Test는 D-2 기준으로 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미 설치된 BWM 장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Commissioning Test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샘플 분석 기관)은 생물학분야, 환경과학분야와 관련된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 이어야 한다.
4. 2005년 7월 22일 IMO에 의해 채택된 MEPC.127(53)의 지침에 따라 개발된 BWMP는 파나마 기국에 의해 평가 및 승인되어야 하고, 기구에 의해 개발된 지침 (BWM.2/Circ.62 BWM 협약 하의 비상조치 방안에 대한 지침을 참조)을 고려하여 개발된 비상시 조치방안 (Contingency measure)을 포함해야 한다. 단, 이미 Contingency measure를 포함하지 않고 승인받은 BWMP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끝-

첨부 : MMC-345 - 1부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조선소,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